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 2007. 11. 21(사천시장)

나. 회 부 : 2007. 11. 21(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8호)
2007. 12. 12~12.13(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다. 상 정 : 2007. 12. 14(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기타
	9,699,684	1,573,470	24,500	7,762,620	326,134	12,960	9,699,684	1,313,510	8,386,174	
인재육성 장학기금	4,289,040	860,500		3,278,450	150,000		4,289,040	360,500	3,928,540	
체육진흥 기금	1,138,290			1,101,290	37,000		1,138,290	37,000	1,101,290	
기초생활 보장수급 장학기금	644,698	170,400		448,248	26,050		644,698	92,000	552,698	
기초생활 보장기금	566,241	100,000		441,964	24,277		566,241	125,000	441,241	
노인복지 기금	814,435	200,000		600,366	14,069		814,435	197,000	617,435	
여성발전 기금	1,130,410			1,080,474	49,936		1,130,410	28,000	1,102,410	
재난관리 기금	1,028,038	242,570		761,266	24,202		1,028,038	403,000	625,038	
식품진흥 기금	88,532		24,500	50,472	600		88,532	71,010	17,52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경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야 함.
- 우리시는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총액은 9,699,68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2008년도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2008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7,762,620천원, 출연금수입 1,573,470천원, 도비보조금 24,500천원, 적립금이자 326,134천원, 기타잡수입 12,960천원 등 9,699,684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313,510천원, 예치금 8,386,17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의 기금 모두는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용을 위한 편성내용도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